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37727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변론 종결2016. 6. 3.

판결 선고2016. 7.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956,831원 및 그 중 90,956,670원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B, C, D, E, F, G, H, I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90,95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J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6. 10.경 피고 A이 사실은 피고 I가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K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A이 주식회사 K에 재직 중이란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피고 A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이하 위 전세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들을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6. 1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문의하는 농협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임대차계약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농협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보증금액을 8,640만 원으로 한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피고 A에게 일반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9,600만 원을 임대인인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과 나누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을 비롯한 여러 건의 사기대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4. 6.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5. 3. 25. 농협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91,054,9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5. 3. 30. 피고 A으로부터 98,230원을 회수하였다.

바. 피고 A은 원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5.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로는 연 8%이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61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F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의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0,956,831원(= 대위변제금 90,956,670원 + 확정손해금 16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956,670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0,956,67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3.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사기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피고들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다른 피고들의 대출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나,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는 인터넷에서 "집 제공하는 분을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먼저 다른 공범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② 피고 B는 다른 공범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은행인 농협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③ 피고 B는 대출금 9,600만 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자 그 중 자신의 몫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A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 B는 다시, 이 사건 대출사기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이득액도 적으므로, 그 책임범위가 피해액의 1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사기에 있어서 피고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대출사기로 인한 자신의 이득액이 전체 피해액의 5%인 480만 원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책임비율도 위 5%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I는, 이 사건 대출사기를 주도한 피고 C, A에게 90% 이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I의 책임비율은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이미 4,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I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들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가해자의 1인의 책임 범위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을나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I가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그 중 1,4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공탁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고가 아닌 농협인 사실, 피고 I는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8억 800만 원의 대출금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단지 4,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I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I는 다시, 대출은행인 농협의 과실을 고려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I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소영